

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9 . 21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영선)

가. 제 안 이 유

-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의 신설된 7급상이자에 대한 지방세면제와
- 국가유공자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 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
그간 면제해오던 도시계획세를 제외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족에 대한
면제범위 가능
-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(2000.1.1)으로 국가유공·상이자의 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하여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
-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판단되고
-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개정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임.
- 기타 자구·형식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